사 설

한방연구센타에 거는 기대

수원캠퍼스 공대 뒤쪽으로 정부주도의 대규모 한방임상연구센타가 들어선다. 올해 착공하여 2천1년까지 총2백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라한다.

우리학교의 경우 5천여평의 부지를 제공하여 연구과제를 통한 학교와의 연계, 미래 제3의학 발전 등 많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계획의 확정으로 수원캠퍼스에는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마스터플랜을 전면 수정해야 할 정도의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구성원들의 관심은 지대하다. 또한 98학년도 신입생·모집요강을 살펴보면 의료 시스템공학과 신설등 학교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엿볼수 있다.

올해부터 입주하게 되는 영통지역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학교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한방센타 사업계획은 영통지역과 더불어 수원캠퍼스의 미래를 생각해보았을 때 간과해서는 안될 요소들로서 떠오른다.

혹자는 시간만 지나면 수원캠퍼스가 자연스럽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적재적소에서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움직임은 완성의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제 수원캠퍼스는 종합대학으로서의 모습을 완연히 갖추기 위한 토대와 주변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미래는 대학무한경쟁의 시기이며 주변변화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만이 난관을 극복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 타대학과는 비교도 안될정도의 주변환경을 형성해나가고 있으며 도약하기 위한 기본토양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고질적인 문제였던 교통문제의 경우 경전철 건설과 영통지역 인구유입에 따른 대중교통 유치를 통해 이미 그 대안이 마련된 상황이고 캠퍼스 타운 문제는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질 예정이다.

또한 우정원 기숙사 건설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교 상주인구의 증가를 유도하는 등 개교 이래 고질적인 저해요소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좀더 적극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 학교의 발전을 견인해내야 한다. 공허한 구호만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한 자세가 요구되어진다는 말이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한방임상연구센타의 건설은 수원캠퍼스의 입장에선 환영할만한 사안이다. 연계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할 대상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이다.

이제 연계 방법들에 대한 몫은 우리앞에 놓여있다. 시의적절한 대안과 준비만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경희만평

김 진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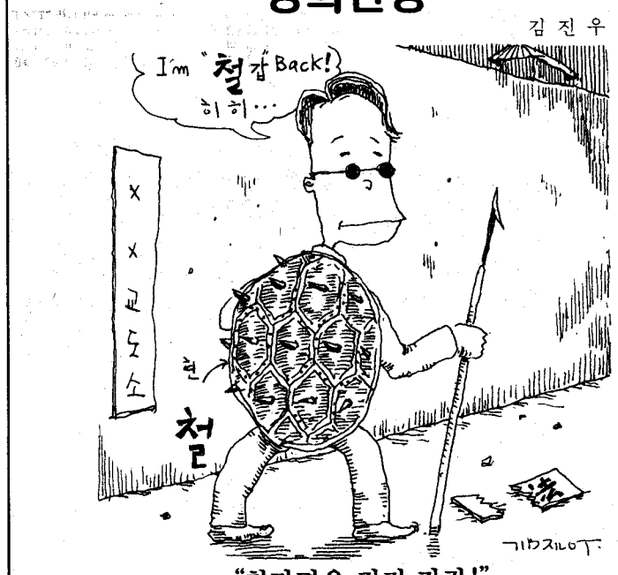

"철가면은 저리 가라!"

시론 되풀이되는 한 · 일 해협 직선기선 논방

일본의 어선나포, 패권주의의 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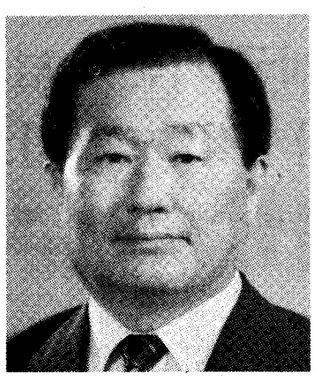

김 찬 규
〈법대명예교수 · 국제법〉

지금 일본이 보이고 있는 작태는 국내법을 개정함으로써 한일 어업협정이라는 국제조약에 의해 지워지고 있는 의무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10월29일밤 대마도 동쪽 13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던 우리어선 개림호가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나포되었다. 지난 6월8일에서 7월8일까지의 한달동안 우리어선 5척이 잇달아 일본측에 나포된 일이 있는데 이를 합하면 이번 일은 최근 들어 6번째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어선이 조업하던 곳은 일본의 「연안의 기선」에서 12해리 외측에 있는 수역이었다. 지금 한일간의 어업관계는 1965년6월22일 조인되어 같은해 12월18일 발효,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는 한일 어업협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데 이 협정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자국의 연안의 기선에서 측정하여 12해리까지의 수역을 자국이 어업에 관해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제1조1 본문).

국제조약 유린

이에 따라 우리는 우리대로, 그리고 일본은 일본대로 「연안의 기선」에서 12해리까지를 각자 어업에 관해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 다시 말해 어업전관수역으로 정해 상대방 어선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어업이 금지되는 것은 상대방의 어업전관수역만이며 그 바깥에서는 자유로운 어업이 허용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위에서 보았듯, 우리어선들은 일본 「연안의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외측에서 조업했기 때문에 그것은 한일어업협정상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나포한 일본측의 변은 무엇일까?

일본은 1977년 제정된 영해법을 작년에 개정, 직선기선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때 도입된 직선기선제도로 해서 자국 영해가 확대되었으며 한국어선이 조업한 곳은 새로이 영해로 된 부분이기에 영해침범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일본측 주장이다.

이같은 일본측 주장에 대해서는 두가지 점이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하나는 일본이 영해법이라는 국내법을 개정함으로써 국제조약에 의해 수립된 질서를 유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이 채택한 직선기선제도가 국제법상 과연 적법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생각컨데, 국제법질서이든 국내법질서이든 모든 법질서가 「약속은 지켜져야한다」(pacta sunt servanda)는 명제하에 정립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을 것 같다. 국제적으로 부담한 의무를 국내법을 이유로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은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일 뿐 아니라 UN헌장에서도 명시되고 있는 바이다. UN은 「정의와, 그리고 조약 및 그밖의 국제법의 연원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기 위해 창설된 것이라는 UN헌장 전문(前文)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된다.

일본 지방법원의 판결

지금 일본이 보이고 있는 작태는 국내법을 개정함으로써 한일 어업협정이라는 국제조약에 의해 지워지고 있는 의무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지난 8월15일 일본의 한 지방법원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한 바 있었거니와 이 판결에서도 이같은 작태가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일본 지방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자국 헌법상의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일본 헌법에는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는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제96조2), 국가의 최고법규인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 등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라고 선언하는 규정이 있는데(제96조1)등 법원은 이를 원용해 앞서 본 바와 같은 판결을 했다. 일본의 한국어선 나포는 국제법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자국 헌법에 위배되는 소행이다.

직선기선제도 적용조건

그렇다면 일본이 자국 영해법을 개정, 새로이 도입한 직선기선제도는 국제법상 요건에 맞는 것일까? 1951년12월18일의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1958년4월29일의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그리고 1982년4월30일의 UN해양법협약에서 인정되고 있는 직선기선제도가 적법한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연안이 깊숙하게 파임으로써 단절이 있는 곳, 또는 연안에 따라 그 지근거리(至近距離)에 숲처럼 된 섬들이 있는 경우」에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둘째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연안의 일반적 방향에서 현저히 벗어나게 해서는 안되고 또한 기선내의 수역이 내수제도(內水制度)하에 놓일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일본의 직선기선은 이러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이기에 그 자체로서도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세·시·봉

양심수 없는 나라(?)

〈최현일 사회부기자〉

때끼 이놈! 빨리 나오지 않고 뭐하는 감. 거긴 대통령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레이.

역시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진리가 가장 충실하게 지켜지는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다. 두 전직 대통이 볕을 보지 못한채 차디찬 마루바닥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역시 대통령의 자리를 탐내는 것은 다 이런 이유에서 기인하는가 보다.

알선수뢰와 조세포탈죄가 적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됐던 김현철씨가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따라 구속된지 5개월 반 만인 11월 3일 수감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김씨의 보석허가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 10부는 "형사소송법 원칙상 불구속 재판이 타당하다"며 보석허가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언재부터 '범죄사실을 초지일관 부인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있는 자'를 보석허가 대상에 포함시켰는지. 일반 범죄자에게는 서슬퍼런 칼날을 휘드르던 검찰도 어찌된 일인지 김씨에 대한 보속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이를 사실상 추인한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언론에서도 한 몫을 단단히 해주고 있다. 양심수 석방을 거론한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언론의 색깔론공세로 제대로 말한마디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역시 김씨의 석방 관련 기사는 코빼기도 볼 수 없었다.

역시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인가 보다. 그렇게 커다란 몸집의 집단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서로간의 협동이 이렇게 잘 이루어 지다니. 이대로 나간다면 세계 1등 국가 달성은 시간문제다.

시민단체들의 입장은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이외에는 할말이 없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에서는 "6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법정공방 끝에 실형이 선고된 김씨에게 추가소명의 기회를 주기위해 석방한다는 것은 다른 권력형 부정축재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처사"라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혹시 김영삼대통령이 전노씨를 그리워해 집권후에 친분관계를 두텁게 하기위해 열심히 노력하는게 아닐까. 그러한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대통령의 자리를 꿋꿋이 지키는 대통령의 의지가 한 없이 부럽기만 하다.

PC 통신원

붉은 악마 상업화 이대로 좋은가

요즘 온국민의 화두가 되고 있는 축구는 이제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일찌감치 월드컵본선행을 탄 한국대표팀은 어느 연예인보다 인기가 높다.

물론 한국대표팀이 승승장구하기까지 응원단의 노력을 무시할 수 없다. 한국대표팀의 새로운 응원단으로 떠오른 붉은 악마들. 처음 PC통신으로 모인 이들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한국대표팀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운동장은 붉은색 유니폼으로 물결을 이룬다.

그러나 월드컵으로 붉은 악마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많은 회사들이 가만히 놔둘리가 만무하다. 각종 회사가 붉은 악마의 상표권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PC통신도 이에 뒤질세라 '붉은 악마의 상업적이용. 이대로는 위기..'라는 주제로 많은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며칠전 문득 TV광고를 보니 레드 데빌이라는 음료수를 선전하는 광고가 붉은 유니폼을 입은 관중들을 배경으로 나온 것을 본적이 있다. 순수한 사람들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모임이 웬지 모르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ID : Sebadoh) 또한 과연 진짜로 음료의 목적에 맞추기 위해서 '레드 데블스'라는 이름을 사용했을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악마라는 이름을 음료나 상품등에 쓸 수 있을 정도로 개방적이였나.(ID : stdesert)등 상업적이용은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는 여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반면에, 여러방면에서 홍보된다면 좋은게 아닐까? 한국의 월드컵 열기를 북돋을 수있는 청량제가 될 것이다.(ID : khw32)라는 의견과 레드 데블스가 기하급수적인 회원증가를 이룰 수 있었던건 방송매체의 도움이 컸고, 서로 힘을 모아야 할 이 마당에 그런건 왜 따져야 하는지...라는 주장(ID : ckh32)도 만만치 않았다. 〈김동혁 기자〉

正道경영 · 초우량LG

다시 받은 학생증

졸업후 2, 3년 월급쟁이로 살다보면,
자기개발은 고사하고 학창시절
꿈과 개성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가슴에 남는 건 회의뿐이죠.

하지만 LG에서는 다릅니다.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기본이고,
전문 경영자를 키우는 HPL 과정과
글로벌 MBA 과정, 해외 석·박사 과정 등
수준 높은 인재육성 제도를 통해
당신을 큰 인재로 만들어 드립니다.
또한 국내 기업 최초로 실시하는
사내 벤처(Venture)제도를 통해
사업가의 꿈도 실현시켜 드립니다.

어때요? LG라는 대학원에서
월급까지 톡톡히 받으며 하고싶은
공부와 자기개발을 마음껏 하는 건!

LG / 인재개발위원회
http://www.lg.co.kr